

경기중부노회 규칙

제 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노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고신총회) 경기중부노회(이하 본회)라 칭한다.

제2조 목적

본 규칙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헌법에 입각한 노회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한다(교회정치 제140조).

제3조 관할구역

본회는 광명시, 과천시, 안양시, 군포시, 의왕시, 시흥시, 안산시, 수원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고신총회) 소속 각 교회를 관할구역으로 한다.

제4조 회원의 자격 : 본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회원은 본 노회 소속 목사와 각 당회에서 파송하는 총대 장로로 한다.
2. 위임목사, 전임목사, 부목사, 전도목사, 기관목사, 종군목사, 선교사는 회원권이 있다.
3. 무임목사는 발언권만 있는 회원이다.
4. 은퇴, 원로 목사는 언권과 투표권이 있으나 피선거권 및 상비부원 또는 각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교회정치 제43조4항).
5. 총대장로는 서기가 추천서를 접수 호명하면 회원권이 있으며(교회정치 제130조4항), 유고시에 한하여 임원회 결의를 거쳐 이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6. 장로총대 선정기준: 각 당회는 시무목사 수에 따라 장로총대를 선정하고, 노회에 파송한다(교회정치 제122조1~2항).

제5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실은 서기가 시무하는 교회에 둔다.

제6조 노회의 직무: 노회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교회정치 132조).

1. 당회, 개체 교회, 목사, 강도사, 전도사, 목사후보생, 소속기관 및 단체의 총찰.
2. 각 당회에서 제출한 건의, 청원, 문의(질의) 및 진정의 접수 처리.
3. 각 당회에서 제출한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접수 처리.
4. 목사후보생의 고시, 교육, 이명 및 권징의 처리.
5. 목사의 자격고시, 임직, 위임, 해임, 전임, 이명 및 권징의 관리와 처리.
6. 강도사의 인허식 시행.
7. 개체 교회 장로의 선택, 임직 및 자격고시 관장.
8. 전도사의 자격고시 시행.
9. 각 당회의 당회록 및 미조직교회의 행정록의 검사와 그 합법여부 표시.
10. 교리와 권징에 관한 해석.
11. 교회의 신성과 화평을 위한 개체 교회 시찰.
12. 개체 교회의 설립, 분립, 합병, 폐지 및 당회조직관장.
13. 개체 교회 및 미조직 교회의 목사청빙 관장.
14. 개체 교회와 미조직 교회의 전도사업의 지도권장과 교육 강화로 인한 영적 유익의 도모.
15. 개체 교회 및 미조직교회의 재정 및 관리의 방침 지도.
16. 총회제출의 청원, 건의, 문의, 전정, 소원, 상소 및 위탁판결의 처리.
17. 총회제출의 노회상향 보고.
18. 총회총대 선출 및 총회지시 실행.
19. 개체 교회와 산하기관의 재산권 문제 처리.

제7조 노회의 각종 명부: 본회는 다음의 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교회정치 정치134조).

1. 시무목사 명부.
2. 부목사 명부.

3. 기관목사 명부.
4. 선교사 명부.
5. 무임목사 명부.
6. 별세목사 명부.
7. 은퇴목사 명부.
8. 원로목사 명부.
9. 강도사 명부.
10. 목사후보생과 전도사 명부.
11. 개체 교회 명부(설립, 분립, 합병, 폐지, 연월일 명기)

제8조 회 집

본회의 정기노회 회집은 년 2회로 하되, 임시노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회집할 수 있다. 노회 예배 시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는 헌금을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의

제9조 정기회 : 정기회는 다음과 같이 회장이 임원회를 거쳐 소집한다.

1. 일시: 10월 둘째 주일, 4월 둘째 주일 후 월요일에 회집한다(단, 총회에서 일정의 일괄 변경 지시가 있을 때 변경할 수 있다).
2. 개회성수: 예정한 시일과 장소에서 본 노회에 속한 시무처가 다른 목사와 장로 각 3인 이상이 회집하면 개회할 성수가 된다(교회정치 제129조).

제10조 임시회

임시회는 노회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와 시무처가 다른 목사 2인과 장로 2인의 청원이 있을 때와 상회의 명령이 있을 때, 임원회를 거쳐서 회장이 소집하되 회집할 장소 및 시일과 안건을 7일전에 목사와 총대장로에게 통지하고 통지서에 기재된 안건만 의결한 후 폐회한다(교회정치 제128조2항).

제11조 계속회

직전 노회에서 미결된 안건처리와 사건 처리상 편리한 장소 및 일자 변경 등으로 속회가 불가피한 경우 본회의 결의를 거쳐 계속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단 장로 총대는 직전 노회의 총대로 한다.

제12조 비밀회

본회의 비밀회는 치리사건 처리상 필요시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회집할 수 있다.

제13조 일반 안건

본회에 부의할 안건과 보고 건은 시찰을 경유하여, 개회 14일 전에 서면으로 서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긴급 안건

본회의 소정 기일 내에 제출할 수 없는 특수한 안건과 회기 중에 발생한 긴급 안건 등은 본회의 허락을 얻어 긴급 안건으로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제15조 발언

본회 회원은 회장의 허락을 얻어 발언대에서 정중한 태도로 간단명료하게 발언하여야 하며, 한 회원이 동일 안건에 대하여 3회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16조 회의석

본회 서기는 정기노회 임원석을 배정하여 임원의 직무수행과 신속한 회무처리에 편리하도록 하며 회원석은 각 시찰별로 배정하여 회의 질서유지를 도모한다.

제17조 회의규칙

본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회의 진행은 “장로회 각 처리회 및 산하기관 등의 회의규칙”에 따르되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행정법규부의 해석에 따른다.

제 3 장 임 원

제18조 임원: 본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목사1인, 장로1인).
3. 서기 1인.
4. 부서기 1인.
5. 회록서기 1인.
6. 부회록서기 1인.
7. 회계 1인.
8. 부회계 1인.

제19조 감사

본회는 2인의 감사를 두되, 목사 1인, 장로 1인으로 한다.

제20조 임원 (및 감사)의 임무: 본 노회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 노회를 대표하며 본 노회가 행하는 업무 일체의 총책임을 진다.
2. 목사부회장은 회장을 돕고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 장로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한다.
3. 서기는 노회의 각종 문부 및 서류와 인장을 관리 보관한다.
4. 부서기는 서기를 돕고 서기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록서기는 회의록 작성법에 따라 회의록을 기록 정리하여 서기에게 보고한다.
6. 부회록서기는 회록서기를 돕고 회록서기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회계는 노회의 결의에 따라 재정을 출납하고 장부를 정리하며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감사를 받은 후, 10월 정기노회에 수지 결산을 보고하고 감사를 받아야 한다. 단 현금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출납하되 회계의 현금보관 한도액은 임원회에 정한다.
8. 부회계는 회계를 돕고 회계의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9. 감사는 본회 회계 재정업무 및 재정 후원기관을 감사한 후,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노회 산하기관의 회계업무는 담당부서에서 감사한 후 정기노회 시 보고한다).

제21조 임원의 선정

1. 본회 임원은 10월 정기노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하되 총회규칙과 같이 회장은 목사 부회장을 과반수로 선임하고, 부회장은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임원은 다점자로 한다.
2. 회장이 과반수를 얻지 못할 시는 부회장 선출과 동일하다.
3. 부회장 투표시 2차까지 결정하지 못할 시는 3차는 다점자로 한다.

제22조 임원의 임기

본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회장과 부회장은 연임할 수 없고, 기타 임원은 2회까지 연임할 수 있고, 결원 된 임원은 임원회에서 보선하여 잔여 임기를 수행한다.

제23조 임원회: 본회 임원회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하여 다음 사항을 처리한다.

1. 노회에서 맡긴 안건의 처리보고.
2. 노회의 절차보고.
3. 서기에게 제출된 안건을 검토하여 본회 또는 소관 각부에 회부.
4. 임시노회 소집 및 노회 어간에 생긴 긴급한 사항의 처리보고.
5. 제 규칙의 조사연구 보고 및 부목사의 사임 및 청빙.
6. 통계표를 작성하여 본회와 상회에 보고한다.

제 4 장 상비부 및 각급위원

제24조 상비부서 및 임무 : 본 노회의 회무를 유효 적절히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 상비부를 두어 소관 사무의 집행 및 위촉된 안건을 심의 보고하고 각 부의 회의록과 회계장부를 반드시 비치하여야 한다. 부원은 각 부 20명 이내로 한다.

1. 행정·법규부: 장로에 관한 일과 강도사, 목사후보생, 전도사에 관한 인사 행정사무와 교회행정 사무를 관할하며 기타 노회에서 맡긴 일을 심리 보고한다. 본회의 규칙을 수정, 해석하고 또 당회록과 행정록을 검사하여 서면으로 본회에 보고한다.
2. 선교부: 총회세계선교회(KPM)와 협력하여 국외선교 사업을 연구계획, 계몽 관리한다.
3. 사회복지부: 구제사업, 교역자 은급, 순교자 유가족 및 사회사업 후생, 기관, 교인생활 지도를 맡는다.

4. 교육부: 교회교육 일체를 주관하며 본 노회 산하의 교육기관(청장년연합회(CE), 주교연합회)을 지도한다.
5. 신학부: 신학문제, 신학생에 관한 일, 및 각종 고시(목사, 장로, 전도사)를 관장하며, 이를 심리하여 보고한다. 부원은 안수 후 15년이 경과한 목사로서 덕목과 지적 능력을 소유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6. 임사부: 목사의 인사 및 목사와 관련된 제반 사무를 심리하여 보고한다. 부원은 안수 후 15년이 경과한 목사로서 덕목과 지적 능력을 소유한 회원으로 구성하되, 목사와 선교사에 관한 인사행정 사무를 관할하며 목사장립에 관한 모든 절차를 주관한다.
7. 전도부: 노회 산하 전도 기관을 지도 감독하며, 전도사업(병원, 교도소, 경찰, 군인 등)을 연구 계획, 계몽 관리한다.
8. 예·결산 위원회: 예산과 수지결산을 노회에 보고한다.

제25조 특별부와 임무: 전문성을 가진 약간 명으로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SFC지도위원회: SFC 지도와 학원전도에 관한 일을 관리하는 일과 소속 간사를 지도 감독한다.

제26조 각부 및 위원회 임원: 각부 및 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임원과 임무를 정하여 소관사항을 처리하게 한다.

1. 부장(위원장): 필요시 부회(임원회)를 소집하며 이를 사회한다.
2. 서기: 부(위원장)회의록을 작성 보관하며 10월 정기노회시 행정법규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회계: 부(위원장)소관 재정을 출납하며 10월 정기노회시 감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7조 정기위원: 본회에 다음과 같은 정기위원을 두며 그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공천위원회: 회장, 부회장, 서기 및 각 시찰장으로 구성하여 각부 위원은 노회 개회 전 공천위원회에서 공천하여 10월 정기노회에서 확정하되 공천시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 1) 각 상비부원은 3년조로 나누어 매년 3년조만 선정한다.
 - 2) 상비부원은 1인 1부를 원칙으로 하나 특별한 경우에는 2개 부서까지는 겸임할 수 있다.
2. 광고위원: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광고의 책임을 맡는다.
3. 안내위원: 회장의 지명으로 선임하되 노회 기간 중 안내질서 및 회원의 출결 사항을 살핀다.

제28조 시찰부: 개체교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정 구역 단위로 다음과 같은 시찰부를 둔다.

1. 구역: 본 노회는 5개 시찰을 둔다.
 - 1) 동부시찰: 광명시, 과천시, 안양 동안구, 의왕시
 - 2) 서부시찰: 군포시, 안양 만안구
 - 3) 시흥시찰: 시흥시
 - 4) 안산시찰: 안산시
 - 5) 수원시찰: 수원시
2. 구성: 각 시찰별로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 단위로 선정하여 노회의 허락을 받아 조직한다. 단 시찰부원은 한 당회에서 장로 2명을 초과 할 수 없다.
3. 임무: 시찰부는 해 시찰 산하 교회를 시찰하고 노회에 보고할 것이며 시찰부를 소집하여 노회에 상정될 안건 및 서류를 심사하여 경유시켜야 한다. 단 청빙조회중인 회원의 사임서 및 이명청원서는 예외로 한다. 시찰부는 해시찰 산하교회의 형편을 시찰하고 노회에서 맡긴 안건을 처리 보고하고, 처리에는 관여하지 못하며 노회가 위임한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교회정치 제 139조6항).

제 29조 특별위원

본회가 필요시 7인 이내로 수습위원 혹은 전권위원, 기타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해 시찰부원은 수습위원은 가능하나 전권위원은 될 수 없으며, 특별부와 정기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 30조 노회 소속기관 (정치156~157조)

1. 본 노회가 인정하는 소속 기관은 다음과 같다.
 - 1) 주일학교연합회
 - 2) 학생신앙운동(SFC)
 - 3) 청장년연합회(CE)

- 4) 남전도회연합회
- 5) 여전도회연합회

2. 본회 산하 연합회 및 기관을 조직하고자 하면 노회의 허락(회칙, 주요 사업계획)을 받아야 한다.
3. 노회 소속기관은 노회의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한다.
4. 매년 임원조직, 사업, 예결산 등을 노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매년 회계 감사를 받아야 한다.
6. 소속기관 및 기관이 본회의 감독을 받지 않거나 정당한 지도를 거부할 때는 그 대표에게 권고하고, 그 권고도 듣지 않으면 그 기관 또는 그 단체에 대하여 법적 조치와 해산을 명할 수 있다.

제 5 장 총회 총대

제 31조 총대

총회 총대는 4월 정기노회에서 헌법에 의한 정수대로 회원 중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정 파송하되 총대 유고시를 대비하여 약간 명의 부총대를 득표의 순위대로 선정한다.

제32조 총대모임

총대모임에서는 총회와 본 노회에서 맡긴 일과 총회에 필요한 대책 및 총회 기간 중에 발생하는 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의 소집으로 회무를 처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다음 노회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 6 장 회 계

제 33조 회계연도

1. 본회 회계연도는 가을노회 회집 익일부터 차기 가을노회 회집 당일까지로 한다.
2. 본회 경상비는 상회부담금 및 기타 연보를 노회재산 수입으로 총당하며 회계 (예·결산위원회)는 예산결산서를 작성하여 10월 정기노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34조 부담금

1. 각 개체 교회의 부담금은 전년도 결산액(주일 및 주정헌금, 일반감사헌금, 십일조헌금)에 의하여 배정하되 그 비율은 노회에서 결정한다.
2. 본회 부담금의 교회별 상하한 금액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3. 본회의 부담금은 10월 정기노회에서 각 시찰회로 배정하고, 각 시찰회는 4월 정기노회 시까지 5분의 3이상을 본회 회계에게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대선출 및 언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 35조 회원여비

1. 본회의 정기노회 참석회원의 여비는 시무교회가 부담하고, 임시노회 경비 및 회원 여비는 청원 교회의 부담으로 하되 총회의 지시에 의한 소집 및 특별한 경우는 임원회 결의를 거쳐 여비를 지급치 않을 수 있다.
2. 은퇴목사의 노회 및 총회 자문위원으로의 참석 여비는 본회에서 부담한다.

제 7 장 부 칙

1조(규칙개정): 본 규칙은 정기노회에서 출석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 고신총회 헌법(교회정치, 권징조례 등)에 위배되는 규칙은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없다.

2조(공문서식): 본회에 제출하는 청원 및 보고서는¹⁾ 총회 공문서 규정에 의한다.

3조(시행일): 본 규칙은 통과일로부터 시행한다.

(2017년 10월17일 제정²⁾/ 2018.4.10., 2019.10.15. 개정)

1)각종 서식은 고신총회 또는 본 노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음.

2)고신총회에서 제시한 표준 노회규칙을 노회설립준비위원회에서 수정하여 채택하였음.